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가단13792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9,066,030원 및 그 중 53,232,954원에 대하여 2021. 5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.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C 주식회사(이하 'C'이라 한다)는 2016. 9. 27. 피고에게 90,000,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, 이자율 연 14.4%, 지연배상금율 연 26.4%로 각 정하여 대출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하여 주었다.

나. C은 2019. 5. 15.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9. 6. 4.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2021. 5. 24. 기준 대출원리금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대출과목	미상환 원금	인수 전 연체이자	인수 후 연체이자	합계
오토저당	53,232,954원	6,840,514원	28,992,562원	89,066,030원

라.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89,066,03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3,232,9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1. 5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6.4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임윤한